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0
----------	------

제출연월일: 2017. 9. 6.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추가 및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안 제2조제6항)

나. 「소하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감면 규정 추가 (안 제3조제9호)

다. 「지방세법」 제197조 삭제(2010. 1. 1.)에 따른 농업소득세 조문 삭제 (안 제5조제3항)

## 3. 근거법규

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 「지방세법」 제197조(2010. 1. 1. 삭제)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17. 6. 19. ~ 2017. 7. 12.(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482호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p> <p>⑥ 「<u>소하천 정비법</u>」(이하 “<u>법이라 한다</u>”)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p> <p>1. ~ 8. (생 략)</p> <p>&lt;신 설&gt;</p>	<p>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소하천정비법</u>」(이하 “<u>법이라 한다</u>”)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u></p>
<p>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② (생 략)</p> <p>③ <u>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삭제 <2010. 1. 1.>

의안 번호	1390	<p>【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h1 style="text-align: center;">심 사 보 고 서</h1>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9. 6.(목)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9. 8.(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9. 18.(월)

## 2. 제안설명 요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추가 및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나. 주요내용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  
(안 제2조제6항)
2. 「소하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공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감면 규정 추가(안 제3조제9호)
3. 「지방세법」 제197조 삭제(2010. 1. 1.)에 따른 농업소득세 조문 삭제 (안 제5조제3항)

### 다. 근거법규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2. 「지방세법」 제197조(2010. 1. 1. 삭제)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원기)**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 및 징수시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 같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 2010. 1. 1부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